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0
----------	-----

발의연월일 : 2020. 6. 16.

발 의 자 : 윤재옥·이 용·추경호
윤두현·김상훈·김희국
정희용·김승수·김용판
홍석준·양금희·강대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 6월에 제정되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이 미흡하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도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제품에 대한 인증·검증을 위한 조사·연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물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법으로서 역할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범사업의 내용에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술을 포함하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며,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범위에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1항).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 다.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 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 범위에물관리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험·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용·보급”을 “이용·보급 및 해외시장 진출”로 한다.

제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및 그 밖의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및 물기업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2.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3. 연구인력의 교류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지원
 4. 해외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5. 그 밖에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대학·물기업 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대한 특례) ①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만을 말한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제18조제1항 중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물환경보전법」”을 “공공하수도관리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자와 같은 법”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을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 및 검증을 위한 기준개발 및 조사·연구”를 “물관리 기술, 제품 및 물관리 서비스의 기준개발, 조사·연구 및 시험·분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u>이용·보급</u>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u><신설></u></p>	<p>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 ----- -----<u>이용·보급</u> -----<u>및 해외시장 진출</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u>제14조의2(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u></p> <p><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및 그 밖의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u></p> <p><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u></p>

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및 물기업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2.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3. 연구인력의 교류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지원

4. 해외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5. 그 밖에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 전

<신 설>

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대학·물기업
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대한 특례) ①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
지에 입주한 기업은 「건축
법」 제19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
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만을 말한
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
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
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
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지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제1
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을 받
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입주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 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 5. (생 략)

② (생 략)

제18조(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물

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

1.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
원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
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① -----
-----공공하수도관리청, 「물

「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실증화 시설(제17조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하수 또는 폐수를 공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 및 폐수를 적정하게 배출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① ~ ③ (생략)

④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2. 제1호에 따른 인증 및 검증을 위한 기준개발 및 조사·연구

3. (생략)

<신설>

「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자와 같은 법-----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

2. ----- 물관리 기술, 제품 및 물관리 서비스의 기준개발, 조사·연구 및 시험·분석

3. (현행과 같음)

4.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및

<p><u>4.</u> (생 략) ⑤ · ⑥ (생 략)</p>	<p><u>교육</u>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p>
--	--